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

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의 안 처 리 결 과

장 성 군 의 회

심 사 결 과

연번	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
1	2786	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	원안가결
2	2787	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	원안가결
3	2773	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4	2774	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5	2775	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6	2776	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7	2777	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8	2778	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9	2779	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0	2780	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11	2781	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12	2782	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13	2783	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4	2784	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	수정가결
15	2785	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 요 내 용

1.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

▪ **발의일자** : 2026. 10. 8.

▪ **발 의 자** : 관광복지위원회

▪ **제안이유**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,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❍ 감사기간 : 2026년 제382회 제2차 정례회(9일 이내)

❍ 대상기관 :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규정된 기관

❍ 대상사무 :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규정된 사무

❍ 감사방법

- 주요시설 대상지 현장방문
-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·답변을 통한 감사
-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

❍ 주요 감사 내용

-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
- 각종 인·허가, 민원처리,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

▪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2. 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

- **발의일자** : 2026. 10. 8.
- **발 의 자** : 건설농정위원회
- **제안이유**
 - 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,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**주요내용**
 - ○ 감사기간 : 2026년 제382회 제2차 정례회(9일 이내)
 - ○ 대상기관 :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규정된 기관
 - ○ 대상사무 :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규정된 사무
 - ○ 감사방법
 - 주요시설 대상지 현장방문
 -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·답변을 통한 감사
 -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증인 등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
 - ○ 주요 감사 내용
 -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
 - 각종 인·허가, 민원처리,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
-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3.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발의일자** : 2026. 10. 6.
- **발 의 자** : 차상현 의장 외 1명

▪ **제안이유**

○ 「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제5조제1항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대상의 인용 조문을 “제3조제1호”에서 “제3조 각 호”로 정비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제1항)

- (현행) 의회는 **제3조제1호**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…
- (개정) 의회는 **제3조 각 호**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…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4.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26. 10. 7.

▪ **발 의 자** : 최미화 의원 외 1명

▪ **제안이유**

○ 장성군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 대응하고, 노인의 사회참여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
○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위원회의 구성・임기・해촉・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,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안 제14조)

○ 교육・홍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안 제16조)

○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~ 안 제18조)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5.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 관리 도모
- **주요내용**
 - ○ 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 범위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 - ○ 공공조형물 설치(이전·교체·해체) 신청 및 기준 규정(안 제5조 ~ 안 제7조)
 - ○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방식 규정(안 제8조 ~ 안 제11조)
 - ○ 공공조형물 설치 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 ~ 안 제14조)
-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6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수시 통보에 따른 국가사업 등 정원 반영으로 업무부담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모
- **주요내용**
 - ○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: 735명 → 739명 (증 4명)
 - ○ 기관별 정원증원 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현행	735	373	18	107	46	191
개정	739	377	18	107	46	191
증감	+4	+4	-	-	-	-

-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7.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첨단3지구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출장소 설치
- **주요내용**
 - ○ 진원면 출장소 설치 조항 신설(안 제6장 면출장소)
 - ○ 「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던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 조례로 이관·통합하고, 종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(안 제25조)
-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8.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가설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- **주요내용**
 - ○ 가설건축물 세부기준 변경(안 제26조제2항)
 - 건축물의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
 - 위생관련 가설건축물 추가
 - 간이저온저장고 기준 명확화
 -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임사항 변경(안 제48조제1항)
 -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(안 제48조제1항)
-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9.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관광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**주요내용**
 - ○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 구분 정비(안 제5조제2항)
 - ○ 개정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최초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및 군의회 보고 내용 추가(부칙 제2조 및 제3조)
-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10.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“찾아가는 이불빨래방” 설치·운영에 따른 “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제공 근거” 마련
 - ○ 타 조례·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·정비
- **주요내용**
 - ○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(안 제2조제13호)
 - ○ 안 제6조(지원내용)을 체계에 맞게 정비,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사업 신설
 - ○ 안 제6조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표 수정
- **의결결과** : **수정가결**

○ 주요 수정사항

- 조례상 조문과 별표의 사업명 일치

· 안 별표 사업명을 “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수학여행경비”로 수정

- 조문 개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 반영

· 안 별표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지원대상을 “제2조 제2호”로 수정

11.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
▪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인용 조문과 용어·표현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

○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내용 정비

▪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○ 주요 수정사항

- 위원장 직위 현행 유지

· 안 제2조제2항 “현행유지”

- 당연직 위원 변경

· 안 제2조제3항의 내용을 “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,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관광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”로 수정

12.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▪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
▪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
▪ **제안이유**

○ 장난감도서관·키즈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회관이 가족행복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▪ **주요내용**

○ <제1장> 총칙 및 일반운영

- 정의, 시설, 운영시간,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- 이용료,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)

○ <제2장>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

- 이용대상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안전관리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안 제16조)

○ <제3장> 장난감도서관 운영

- 장난감도서관 기능 및 회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~ 안 제21조)
- 대여 및 반납과 연체료, 연회비,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 ~ 안 제26조)
- 기증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 ~ 안 제29조)

○ <제4장> 장성군 여성회관 운영

- 여성회관 업무, 교육의 운영,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 ~ 안 제32조)

▪ **의결결과 : 수정가결**

○ **주요 수정사항**

- 현금 변상 부과 의무화

· 안 제27조제1항의 내용을 “다만,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”로 수정

13.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- **주요내용**
 - ○ 법적 위임 근거 명시(안 제1조, 안 제11조)
 - ○ 보건복지부 「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조례 정비(안 제4조제3항, 안 제5조제1항제10호, 안 제6조 신설, 현행 제10조 삭제, 안 제11조제3항제4호)
- **의결결과** : **원안가결**

14.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6. 10. 8.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장)
- **제안이유**
 - ○ 장성군 청년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함.
- **주요내용**
 - ○ 청년상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○ 청년상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 - ○ 사용・수익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0조)
 - ○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○ 사용허가 취소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6조)

▪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○ 주요 수정사항

- 허가대상 요건 명확화

·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창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을 “창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재창업예정자”로 수정

- 보증금 예치 규정 의무화

·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“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”로 수정

- 별표의 청년상가 위치 표기 정비

· 안 별표의 장성군 청년상가 위치를 “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6-4”에서 “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81-1”로 수정

15.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26. 10. 8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산유통과장)

▪ 제안이유

○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갱신 부담을 덜어주고, 품목 출하실적 보고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.

▪ 주요내용

○ 사용허가(안 제5조 5항)

○ 사용책임(안 제10조 3항)

○ 인용된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 반영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